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학사운영규정

제정 2003.10. 9. 규칙 제415호

개정 2004. 4. 6. 규칙 제426호

2008. 6.19. 규칙 제499호

2010. 3. 5. 규칙 제521호

2011. 2.14. 규칙 제549호

2011.11.15. 규칙 제573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.)에서 한국 체육대학교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한다.),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(이하 "사회체육대학원"이라 한다.), 한국체육대학교교육대학원(이하 "교육대학원"이라 한다.)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학사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입 학

제1절 신입학

제3조(신입생모집계획) 교무과에서는 매 학년도 입시 기본방침에 의거 신입생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- 제4조(지원절차)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신입생모 집요강에서 정한 서류 및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(입학사정) ① 입학자의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은 일반전형은 성적순 에 의하고, 특별전형은 취득점수 순에 의한다.
 - ② 입학인원 내라도 입학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부적격자로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학원위원회가 판단하면 입학사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2절 재입학

- 제6조(재입학) ① 학칙 제41조에 의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 전형 절차에 따라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 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④ 재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- 제7조(재입학자의 학적관리) 재입학자의 학기는 퇴학 또는 제적당시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 한다

TILOLEFEE	정규 등록학기수	이 수 학 점		
세합역역기		대학원	사회체육대학원, 교육대학원	
1	1학기 이상	9학점 미만	6학점 미만	
2	1학기 이상	9학점 이상 - 18학점 미만	6학점 이상 - 12학점 미만	
3	2학기 이상	18학점 이상 - 27학점 미만	12학점 이상 - 18학점 미만	
4	3학기 이상	27학점 이상 - 36학점 미만	18학점 이상 - 24학점 미만	
5	4학기 이상	36학점 이상 - 45학점 미만	24학점 이상	
6	5학기 이상	45학점 이상 - 54학점 미만		
7, 8	6학기 이상	54학점 이상		

※ 단, 대학원 석사과정의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4학기에 재입학 한다

제3절 편입학

- 제8조(전형방법) 편입학의 전형방법은 전적대학원의 성적, 필기시험, 구술 시험, 서류심사 등으로 하되,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위원회에 서 결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.
- 제9조(편입학자의 학점 및 재학기간 인정) ①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소속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한다.
 - ② 편입할 수 있는 학기는 다음과 같으며, 편입학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

편입학 학기	편입학 자격		
	대학원	사회체육대학원, 교육대학원	
2	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	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	
	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인 자	인정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	
3	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	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	
	인정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	12학점 이상인 자	

제3장 등록

- 제10조(등록) 원생은 학칙 제44조에 의거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납입금 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)을 납부하고, 수강신청을 하여야 당해 학기 재학생이 된다. 다만, 학칙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1조(등록의 구분) ① 제10조에 의한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.
 - ② 정규등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의 등록을 말하며, 연구등록은 수료 후 졸업(학위취득)까지를 말한다.

- ③ 연구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연구등록 중인 자의 임무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12조(납입금) ① 매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과 그 납부 기간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.
 -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원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면제한다.
 - ③ 납입금의 납입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3조(연구등록금) 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연구등록금은 다음과 같다.
 - 1. 박사과정 : 기성회비의 10의 4
 - 2. 석사과정 : 기성회비의 10의 3
 - ②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원생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연구등록 후 박사과정은 6학기, 석사과정은 4학기이상 경과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재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③ 연구등록금징수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- 제14조(연구등록생의 임무 및 자격) ① 연구등록생은 원생의 신분으로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 - ② 연구등록생은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.
 - 1.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 및 수강
 - 2. 논문연구계획서의 발표
 - 3. 논문제출
 - 4. 학내시설 이용
 - 5. 학생증 발급
- **제15조(납입금의 반환)** 과오납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원생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4장 휴학 및 복학

제1절 휴학

- 제16조(휴학의 종류)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휴학 : 가정사정, 질병, 해외유학 또는 연수,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
 - 2. 군입대휴학 :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(의무복무로 인한 경우)
- 제17조(휴학 절차)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 비치된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,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휴학은 등록을 필한 원생에게 허가한다. 다만, 소정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제2절 복학

- 제18조(복학시기) ① 복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업일수 3분의1(학기개시 후 5주)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
 - ② 군입대 후 전역예정자의 경우, 출석일수 확보가 수업일수 3분의2이상 가능한 입증서류(휴가증, 전역예정증명서,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)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 분의2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.

제5장 교육과정

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
- 제19조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- 제20조(교육과정 개편) ①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한다. 다만, 모집 단위의 통합·신설 및 폐지 시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 교육과정을 개편할 경우에는 개정사유서, 개편 안 및 신·구문대조표를 작성하여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개편한다.
- 제21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과정 및 전공학과별로 편성하며 "별표 1"과 같다
- 제22조(교과목번호) ① 모든 교과목에는 교과목번호를 부여한다.
 - ② 교육과정에 부여된 교과목번호는 고유번호이며,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.

제2절 교육과정 이수

- 제23조(교육과정의 이수) 교육과정의 이수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.
- 제24조(타학과 및 타전공과목의 이수) 각 대학원 내의 타 학과 및 타전공 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- 제25조(편입생의 이수과목 및 학점인정)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과(전공)의 교과과정에 따른다.

제26조(복학생 및 재입학한 원생의 교과이수) 휴학한 원생이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휴학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제6장 수업

제1절 수업계획서

- 제27조(학사일정) 총장은 학년도 개시 30일 이전에 학사일정을 공고하여 야 한다.
- 제28조(강의계획)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20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.
- 제29조(시간강사 위촉) 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거나 담당시수 초과 등으로 인한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간강사는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

제2절 강의평가

- 제30조(강의평가)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학기에 설강된 교과목 의 담당교원(시간강사 포함)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.
 - ② 강의평가는 교과목의 강좌별 전체 수강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.
 - ③ 각 대학원장은 강의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교수업적평가 자료로 활용한다.

- ④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, 다음 학기 강의계획수립 및 강의 진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.
- ⑤ 시간강사의 평가결과는 시간강사를 추천한 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 시간강사 추천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.

제3절 수업시간표

- 제31조(수업시간표 작성 및 변경) ① 총장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1주일 전까지 개설과목과 시간표를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수업시간 중복, 분반 및합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- 제32조(수업시간)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.
- 제33조(수강인원의 조정) ① 과목당 수강인원이 박사과정 4명 미만, 석사 과정 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.
 - ② 과목당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수강인원은 30명으로 한다. 단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동일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다음 기준에 의거수강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.
 - 1. 기 수료한 학점이 많은 자(초과 이수학점 포함)
 - 2. 평균평점이 우수한 자
 - 3.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절 수강신청

제34조(학점의 구분) 원생이 재학 중 수료와 학위취득 및 연구에 필요한 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- 1.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(이하 "수료필수학점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으며, 평균평점이 3.0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선수과목 수강지정자는 당 해 선수과목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.
 - 가. 석사과정 : 24학점 이상(대학원생은 연구법 6학점 포함, 사회체육 대학원생은 전공과목 12학점포함,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12학점 및 교직·교과과목 6학점이상을 포함) 단, 대학원 스포츠코칭 석사 과정은 34학점 이상
 - 나. 박사과정 : 36학점 이상{전공 12학점, 연구법 6학점, 모학문 및 심화전공 18학점(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)}
- 2. 연구에 필요한 학점(이하 "연구학점"이라 한다)은 원생의 희망이나 지 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으로 수 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별도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한다.
- 3. 선수과목이수학점은 수료 필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35조(수강신청절차) ① 수강신청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작성된 수업시간 표에 의한다.
 - ②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
 - ③ 복학자 및 기타 부득이한 자는 수업일수 3분의1 이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④ 각 대학원 내의 소속 학과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나 전공의 교과 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
 - ⑤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⑥ 기 이수한 교과목(동일 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)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.
- 제36조(수강신청 변경) ①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강 신청변경원을 수강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.

-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전항의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1.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합반된 경우
- 2. 수강신청 후 수업시간이 변경되어 다른 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된 경우
- 3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37조(교과목의 재수강) ① 재수강은 C+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재수강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재수강에 의한 성적은 A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재수강에 의한 성적이 이전 성적 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제5절 출석관리

- 제38조(출석부) ① 교과담당 교수는 원생의 출결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② 교과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성적을 기록하고, 그 출석부를 당해 학기 종료 7일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장 시험 및 성적

- 제39조(시험의 구분) ① 시험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수시시험 등으로 구부하다.
 - ② 중간시험은 학기 중간에, 기말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험실시여부, 실시방법 등은 교과담당교수 재량에 의한다.

- 제40조(평균평점) 학칙 제65조 제3항의 수료에 필요한 평균평점 산출은 취득하지 못한 점수(F)를 제외하고 수료필수 학점중 취득한 점수만으로 산출하며, 재수강과목의 경우 높은 점수를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. 단, 성적통지 및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평균평점의 산출은 당해학기 수 강신청한 모든 수료 필수학점의 평균평점으로 한다.
- 제41조(학점의 표기방법) ① 수료 필수학점은 과목별로 등급, 점수, 평점으로 표기한다.
 - ② 연구학점과 선수과목 학점은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등급은 "S"(성 공)로 표기하고 점수를 기재하되 평점은 기재하지 아니한다.
- 제42조(성적입력) 교과담당교수는 교과목성적을 학기 종료 7일 이내에 전 산 입력하여야 하며, 입력되지 아니한 원생의 성적은"F"로 처리한다.
- 제43조(미완인 성적의 처리) 학칙 제65조 제5항에 의거 성적조정이 미완 인 교과목에는 잠정적으로 "I"를 부여하며 당해 학기 종료일까지 학점 이 부여되지 않으면 "F" 로 처리한다.
- 제44조(성적 정정 금지) ① 과목담당교수가 당해학기 강의 종료 후 제출 한 성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.
 - ② 전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성적을 정정할 경우 과목담당 교수의 사유서를 제출하여,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.
- 제45조(학점의 학적부 기재)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되 "F" 로 처리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.
- 제46조(학기인정) ① 학기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
 - 1. 학기의 인정은 수료 필수학점의 취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

가. 석사과정

	수료필수 학점취득		
인정학기	대학원	사회체육대학원, 교육대학원	등록학기
1	9학점미만(12학점 미만)	6학점미만	1학기이상
2	9학점이상 18학점미만(12학점이상 24학점 미만)	6학점이상 12학점미만	2학기이상
3	18학점이상 24학점미만(24학점이상 34학점미만)	12학점이상 18학점미만	3학기이상
4	24학점이상(34학점이상)	18학점이상 24학점미만	4학기이상
5		24학점이상	5학기이상

※ () 안은 대학원 스포츠코칭 석사과정임.

나. 박사과정

인정학기	수료필수 학점취득	등록학기
1 학기	9 학점 미만	1학기 이상
2 학기	9 학점 이상 18 학점 미만	2학기 이상
3 학기	18 학점 이상 27 학점 미만	3학기 이상
4 학기	27 학점 이상 36 학점 미만	4학기 이상
5 학기	36 학점 이상 (논문지도 1차학기)	5학기 이상
6 학기	36 학점 이상 (논문지도 2차학기)	6학기 이상

다. 석 • 박사 통합과정

인정학기	수료필수 학점취득	등록학기
1 학기	9 학점 미만	1학기 이상
2 학기	9 학점 이상 18 학점 미만	2학기 이상
3 학기	18 학점 이상 27 학점 미만	3학기 이상
4 학기	27 학점 이상 36 학점 미만	4학기 이상
5 학기	36 학점 이상 45 학점 미만	5학기 이상
6 학기	45 학점 이상 54 학점 미만	6학기 이상
7 학기	54 학점 이상 (논문지도 1차 학기)	7학기 이상
8 학기	54 학점 이상 (논문지도 2차 학기)	8학기 이상

- 2. 수료는 수료 필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이수함을 말한다
- 3. 수료예정은 수료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업연한 최종학기에 재학 중임을 말한다.
- 4. 졸업은 학위논문을 취득하였음을 말한다.
- 5. 졸업예정이란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함을 말한다.
- ② 학적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증명서,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③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논문학기와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.
- 제47조(휴학자의 성적처리) 수업일수 3분의2가 경과한 이후에 제16조 제2 호에 의하여 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- 제48조(성적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.
 - 1.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2 이상 출석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
 - 2.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
 - 3. 시험부정행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

제8장 연구생

- 제49조(연구생 선발인원) 본 대학원에 연구생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제50조(연구생의 과목수강) ① 연구생은 매학기당 대학원 9학점, 사회체육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, 연구생 재학기 간중 대학원은 18학점,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12학점을 초과 하여 수강할 수 없다.

- ② 전항에 의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, 평가는 연구학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.
- 제51조(연구생의 청강료) ①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청강료는 연구등록금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제52조(연구생의 학칙적용) 연구생의 임무 및 학칙의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칙을 준용한다.
- 제53조(연구생 자격부여) 연구생에게는 특수교과목 또는 과제를 수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.
 - 1. 교과목의 수강
 - 2. 학내시설 이용
 - 3. 연구생증발급
 - 4. 과제물 연구
- 제54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학사 운영규정을 적용하되, 동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에서 정한다.

부 칙 (제415호, 2003. 10. 9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.
- ② (학사운영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대 학원학사운영규정,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, 한국체 육대학교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부 칙 (제426호, 2004. 4. 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444호, 2005. 6. 2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499호, 2008. 6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521호, 2010. 3. 5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중 제34조 제1호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549호, 2011. 2. 14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573호, 2011. 11. 15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중 제34조 제1호 '가'목 및 '나'목 규정은 2012학년 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